제28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 회 사 무 국 위 원 회 제 안

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제약	<u></u> 안연됩	일일	2025.	3.	14.
제	안	자	의회운영우	l원.	회위원장

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 안 번 호

제안연월일 : 2025. 3. 14.

제 안 자: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이유

국민권익위원회의 「86개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」에 따라 자치법규의 내용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개선하 여 원활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임기 수정 및 연임 제한 규정(안 제95조제3항)
-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기피 규정 신설(안 제97조제2항~3항)
- 자구 수정(안 제99조제2항)

3. 개정조례안: 붙임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제42조

경상북도구미시의회규칙 제 호

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5조제3항 본문 중 "2년으로 하며,"를 "3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"으로 한다.

제97조의 제목 "(자문위원의 제척·회피)"를 "(자문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- 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.

제99조제2항 중 "의회사무처"를 "의회사무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5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)	제95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)
①・② (생 략)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<u>2년으로</u>	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3년으로 하</u>
<u>하며,</u>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의장	<u>며, 한 차례만</u>
은 자문위원이 질병, 장기여행,	
중도 사퇴, 품위손상, 그 밖에 직	
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	
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	
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	
해제할 수 있다. ④ (생 략)	 ④ (현행과 같음)
제97조 <u>(자문위원의 제척·회피)</u> ①	제97조 <u>(자문위원의 제척·기피·회</u>
(생 략)	<u>피</u>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자문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	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	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
자문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	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
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	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
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	할 수 있고, 자문위원회는 의결로
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	기피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
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.	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
<u><신 설></u>	<u>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</u> 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
	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
	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
	<u>야 한다.</u>

제99조(간사) ① (생 략)	제99조(간사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의장은 <u>의회사무처</u> 소속 직원	② <u>의회사무국</u>
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하여 자문	
위원회 실무를 처리하게 할 수	
있다.	